동업계약서

우리가 남이가? 우리 사이에 계약서가 필요하나?

동업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사업할 때 대부분 동업을 합니다. 왜냐하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초기에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짊어져야 할 짐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또, 친구들끼리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의기투합하여 정말로 사업을 같이 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혼자서 하기에는 사업을 위해서 부담해야 할 사업자금도 부담이 되고, 사업을 하면서 해 나가야 될 업무의 양도 만만치가 않아서 부담되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한다? 쉽지 않습니다. 내가 대표가 되어서 투자자도 만나고, 내가 직접 개발도 하고, 내가 직접 마케팅도 하고, 내가 직접 회사 살림 챙기면서 직원들도 챙기고? 말만 들어도 쉽지 않죠? 그래서 동업이 필요한 겁니다.

동업 계약서 제목은 그냥 편하게 지으시면 됩니다. 동업계약서도 좋고, 합의서도 좋고, 약정서도 좋고, 각서도 좋습니다.

제1조(계약의 목적)

[ ] (이하 ‘갑’이라고 한다)와 [ ] (이하 ‘을’이라고 한다) 은 [ ] 를 공동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운영과 수익 정산 등에 관한 당사자(‘갑’ 과 ‘을’ 을 각 당사자라고 하거나 둘 모두를 칭할 때는 당사자들이라고 한다)의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정하기 위해서 본 계약을 체결한다.

통상 계약서(합의서, 약정서, 각서 명칭 불문) 제일 처음에는 이 계약서를 체결한 목적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갑돌이와 을순이가 김밥가게를 차려서 공동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이에 맞게 위 빈칸에는 ‘갑돌이, 을순이, 김밥가게’ 라는 단어가 들어 가면 됩니다.

제2조(출자 의무 및 지분 비율)

1. 갑은 공동사업을 위해 금 [ ] 원을 출자하고, 을은 금 [ ] 원을 출자하기로 하고, 출자에 따른 지분 비율은 갑이 [ ] %, 을이 [ ] % 로 한다.
2. 을이 공동사업의 대표를 맡아 [ ] 등 업무를 주로 하는 것을 감안하여 출자 비율이 아니라 위와 같은 비율로 지분 비율을 정하였다.

처음 사업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당연히 자본금이겠죠. 보통 출자금 비율에 따라 지분 비율이 정해지기도 하나 때에 따라서는 출자금 비율이 아닌 공동 사업에서의 역할을 고려하여 지분 비율이 정해지기도 합니다. 내가 회사 운영, 또는, 가게 운영을 전부 도 맡아 다 하는데 출자금 비율에 따라서 딱 칼로 잘라서 지분을 정해 놓으면 내가 얼마나 짜증나고 억울합니까? 나중에 가서 동업계약서 안 쓰고 억울한 소리 하지 말고 미리 딱 정해 놓으면 좋습니다.

제3조(당사자의 의무)

1. 갑은 공동사업을 위해 [ ] 역할을 한다.
2. 을은 공동사업을 위해 [ ] 역할을 한다.

사업이라는 게 장난은 아니죠? 사업이 장난입니까? 아닙니다. 공동사업을 위해 처음 사업 시작할 때 너는 뭐 해라? 나는 뭐 할 게! 이러면서 각자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게 되죠? 논의 끝에 각자의 사업에서의 역할이 정해집니다. 나중에 가서 “니가 이 사업을 위해 한 것이 무엇이 있냐? “고 소리치지 마시고 미리 따박따박 동업계약서에다가 각자의 역할을 적어 둡시다.

제4조(이익 배분 및 손실 부담)

1. 당사자들은 [ ] 년 [ ] 월 [ ] 일부터 공동계약 종료시점까지 순이익(여기서 말하는 순이익은 [ ]를 말한다)을 각자 지분 비율에 따라 매달 정산하여야 한다.

수익을 나누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우리가 사업을 왜 합니까? 돈 벌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정산 방법 때문에 싸우지 말고, 어떻게 정산할 지를 구체적으로 정해 두면 좋습니다.

1. 상대방이 원할 경우 언제든지 회계(세무)업무를 담당한 사람은 장부, 장부의 기초가 되는 통장내역, 세금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열람 및 복사하게 해 주어야 한다.

서로 장부를 보여주니 안 주니 실랑이 벌이지 마시고, 떡 하니 장부는 서로 공유하는 것으로 못 박아 둡시다. 니 내 못 믿나? 믿지. 믿으니까 같이 사업도 하고, 장부도 보여 달라고 하지! 오케이?

1.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갑이 손실의 [ ] %, 을이 손실의 [ ] % 를 부담하여야 한다.

손실은 지분 비율에 따라서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사이 좋게 부담하는 게 좋겠죠?

그러나, 손실 부담에 대해서 미리 정해 놓지 않으면, 수익 배분만큼이나 분쟁의 소지가 남게 됩니다. 우리 사업이 잘 되면 위기인데요. 안 되면 위기가 더 크게 옵니다. 누가 책임을 지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죠.

제5조(경업 금지)

1. 당사자들은 동업계약 기간 동안 공동사업과 같은 종류 혹은 유사한 종류의 사업을 경영할 수 없고, 직원으로 고용되어 일 할 수 없다. 단,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명시적인 허락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위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는 상대방에게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공동 사업하면서 뒤로 다른 사업하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같이 사업을 할 때는 같이 하는 사업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한 눈 못 팔게 서로 경업 금지 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6조(동업계약 기간)

공동 사업을 하는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 ] 년이다. 단, 계약 종료일로부터 [ ]개월 전에 r가 당사자들이 상대방에게 계약 갱신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하면 동일한 조건으로 같은 기간 계약이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무한정 같이 사업을 할 수는 없겠죠? 기간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서로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같이 사업을 하다가 너무 죽이 잘 맞는데, 계약 기간 만료되었다고 헤어지게 되면 너무 아쉽겠죠?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계약 연장에 대한 조건도 넣어 두면 좋습니다.

제7조(계약 해지 또는 동업 정산)

1.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동업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2. 당사자가 계약 종료를 상호 합의하는 경우
3. 제6조에 의한 계약 갱신의 의사표시를 상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4. 출자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가 출자 의무를 정해진 기한 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 ]
6. 기타 동업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동업을 정산하고 싶은 경우를 각자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서 적어 주시면 됩니다. 몇 가지 예시가 되는 상황들에 대해서만 적어 두었습니다.

1. 전 항의 동업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귀책 사유 있는 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고,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

계약 해지의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겠지요?

1. 계약이 해지되어 동업을 정산하는 경우, 분배가 가능한 재산이 있는 경우 지분 비율에 따라 재산을 분배하고, 정산 시점에서 손실을 보고 있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손실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동업이 정산된 시점에 남아 있는 재산을(또는 손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손실) 어떻게 분배하여야 할 지도 미리 정해 놓아야 합니다. 서로 궁합이 맞아 뭉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잘 헤어지는 것입니다.

제8조(지분 양도)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각 당사자들은 자신의 지분을 동업자 외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내가 누군가와 같이 사업을 하는 것은 그 누군가 때문이겠죠? 아무하고나 사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동업 계약을 할 때는 지분을 함부로 넘기게 하면 안 됩니다.

제9조(손해배상)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당연히 손해배상책임 부담해야 겠지요?

제10조(비밀유지)

1. 각 당사자들은 동업을 하면서 취득한 상대방에 대한 개인 정보 등 모든 정보, 공동사업과 관련된 정보(그 형식과 내용을 불문하고)를 모두 비밀정보로 간주하고,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사업 목적 외로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이용하여 자신 혹은 제3자에게 이익을 취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2. 위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 당사자는 위반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이 있으면 그 이득액 전부를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위약벌로서 금 [ ] 원을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사업을 같이 하다 보면, 상대방에 대한 개인정보부터 해서 공동 사업에 대한 각종의 정보를 취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 모든 정보들은 비밀로 취급해야 겠지요?

제11조(분쟁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들은 우선 상호 신뢰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 ] 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관할 법원으로 하여 그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분쟁이 발생할 때는 원칙적으로 상호 원만하게 협의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잘 되자고 동업 시작 했는데 싸우면 되겠습니까? 그래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법원 가야죠.

당사자 사이에서 본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계약서 원본 2통을 작성하여 당사자 성명 옆에 각 서명 및 날인 후 각 당사자가 1부씩 보관한다(서명의 경우는 신분증 사본을 각 첨부하고, 날인의 경우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인감도장으로 날인한다). 또는, 리걸팀톡 서비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0[ ] 년 [ ] 월 [ ] 일

갑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

을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